
	고려아연(주)	문서번호	17
		제정일	2022. 3.
		개정일	2023. 11. 10.
		개정번호	1

협력회사 행동규범

시행일: 2023년 11월 10일

	협력회사 행동규범	문서번호	17
		제정일	2022. 3.
		개정일	2023. 11. 10.
		개정번호	1

목적

고려아연은 협력회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실천과 긍정적인 세상으로의 변화 유도를 위해 「고려아연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협력회사의 자발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윤리, 인권, 안전, 환경에 대해 협력회사의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협력회사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본 행동규범과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관련법규가 개정되거나, 고려아연의 협력회사 관리정책 또는 규범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고려아연의 모든 협력회사는 고려아연과 거래함에 있어 ESG 행동규범 실천에 적극 협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인권 및 노동 보호에 대한 행동규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 기준에 따라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내부 구성원은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실습생, 파견 근로자 등 기업 운영과정에 관여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1-1.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모든 노동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노동(노예, 인신매매, 인신구속 계약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최수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한편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부를 근로자에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및 근로 허가증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1-2. 미성년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협력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만 15 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 세 미만인 자를 포함) 또는 자국/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1-3. 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

협력회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사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4. 임금 정책을 준수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4대보험 및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조치의 수단으로 임금 삭감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임금 지급기준 및 항목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5. 근로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1-6.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협력회사는 편견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근로자는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조합원신분, 국적, 결혼여부 등으로 인해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 등에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또는 사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7. 결사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하고, 단체 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함께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이나 보복,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안전 보건의에 대한 행동규범

당사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종사자'를 의미하며, 이 규범에서 동일하게 적용함)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구축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1.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와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잠재위험요인 및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및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와 방호벽 등 근로자 보호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 안전문제 관련 우려사항을 경영진에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에 대비함으로써 위험상황에 대비합니다.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해 근로자 대상 비상대피훈련, 탈출시설, 화재감지 및 소화장비 확보를 통해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3. 산업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있는 작업, 체력소모가 많은 조립업무와 같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인지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4. 위생적인 식품과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통해 청결한 근로환경을 제공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 보관,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와 환기장치, 비상구, 냉/난방 장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2-5. 보건/안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는 근로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3. 환경 보호에 대한 행동규범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폐기물,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 물질 관리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1. 환경법규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 변경 신고 등) 사항을 취득 및 유지하고 최근 유지사항을 반영하며,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보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및 폐기 라벨 사용에 대한 법규 혹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허가가 필요한 특정 물질에 대한 법규(예: 산업안전보건법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3-2. 환경경영 목표를 수립합니다.

환경 주요 영역(에너지, 물,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물질, 토양 오염, 소음 및 악취 등)에 대해서 내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환경경영 추진을 위한 담당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3.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합니다.

협력회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 및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형별로 측정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을 측정해야 합니다.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과 대기오염 배출량을 측정하고 필요시 전체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5.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합니다.

협력회사는 오염의 최소화 또는 제거를 위해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하고 배출하여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정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절감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취급 단계별로 자체점검과 제3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및 폐기 라벨 사용에 대한 법규 혹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허가가 필요한 특정 물질에 대한 법규(예: 산업안전보건법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3-6. 자연자본을 관리합니다.

지역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 및 모니터링 관리하고 원자재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물관리를 위해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수질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자원 절약과 재활용, 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등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자원사용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4. 윤리 경영에 대한 행동규범

당사 거래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1. 청렴한 사업 관행을 유지합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와의 거래 시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 혹은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 제안,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뇌물공여, 사기, 자금세탁, 횡령, 은닉, 거래처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어떠한 부패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접대, 편의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려아연 사이버 감사(https://www.koreazinc.co.kr/?pageName=customer/cyber_audit&mainMenuId=kz-customer&subMenuId=kz-customer-question&menuId=kz-customer-cyber-audit)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2. 공정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당사와의 거래에서 다른 사업자와 가격 담합, 담합 입찰 등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불합리한 경쟁 제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광고, 거짓광고, 담합 등 공정거래 법규 위반 금지 관련 내부 규정을 보유 및 시행합니다.

4-3. 정보보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협력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 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 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와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경영정보를 사전 승인없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제 3 자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4-4.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노무, 안전보건, 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ESG 성과,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4-5. 지적재산을 보호합니다.

협력회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려아연의 지적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6. 내부고발자를 보호합니다.

구성원이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유 및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 발생 시 내부고발 사실은 비밀로 유지하며, 보복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제기된 문제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5. 책임광물에 대한 행동규범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에 대한 내부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1. 책임 있는 광물 조달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협력회사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코발트,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은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이어야 합니다. 심각한 인권유린,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 수자원 고갈, 폐기물, 오염 등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불법, 비윤리적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관련 광물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5-2. 공급망 위험을 식별합니다.

광물의 채굴, 가공 과정에서 존재하는 공급망 위험을 식별, 완화, 해결하여야 합니다. 분쟁지역과 고위험 지역으로부터의 관련 광물의 원산지, 공급선에 대한 정책을 개발 및 실행하고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이하, OECD 가이드)'를 포함한 모든 적용 법률과 국제 산업 기준에 따라 실사(due diligence)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고려아연의 요구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3. 공급망을 관리합니다.

OECD 가이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광산, 제련소 등에서 처리된 관련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공급상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광물의 공급상이 OECD 가이드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